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며,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김선문
전화 042-470-4040

보도자료
2024. 8. 13.(화)

제 목

철도 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
- 뇌물수수한 본부장과 공여자인 공사업체 대표 등 4명 기소(3명 구속)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오늘(8.13.)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과정에서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A와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B, C 등 3명을 구속기소, 업체 실운영자 D를 불구속기소하였음
-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 A는 전기공사의 발주, 시공관리, 낙찰적격 심사, 불법 하도급 감시 등을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 낙찰자로 하여금 A가 지정하는 특정 업체에게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3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순금 호랑이 등을 상납받고,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제공을 약속받음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불가
- 국가철도공단 고위 간부가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 하도급을 조장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입찰을 형해화하고, 국가 기간시설인 철도시설 공사에서 무자격자의 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의 실체를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였음
- 대전지검은 국가철도공단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였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음

I 사건 개요

1. 피고인

- A[61세, 前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그 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
- B[60세, 전철전력설비 관련 회사 및 전차선로 관련 회사 회장]
- C[51세, 전철전력설비 관련 회사 대표]
- D[51세, 전차선로 관련 회사 대표]

2. 공소사실 요지

연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분 결과
1	A (61세, 前 공단 본부장 겸 상임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22.경까지 3건의 철도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 3명에게 'B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시공할 수 있게 하도급을 줘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지위를 이용해 공사 진행 등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여 위 대표들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 [업무방해] - 공사과정에서의 편의 등에 대한 대가로, B, C, D로부터 '20. 7.경 시가 합계 6,605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두 점을 수수하고, B, C로 하여금 '21. 1.경 설 명절 선물 비용 200만 원을 대납케 하고, '22. 3.경 시가 368만 원 상당의 순금호랑이 1냥을 수수하고, '23. 8.경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벤츠 S450 승용차 1대 수수를 약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구속 구공판 (24. 8. 13.)
2	B (60세, 전차 관련 회사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 D와 공모하여 A에게 롤렉스 시계, 설 선물비용 대납, 순금 호랑이, 벤츠 승용차 등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 약속 [뇌물공여] 	구속 구공판 (24. 8. 13.)
3	C (51세, 전차 관련 회사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이 B, D와 공모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 및 약속 [뇌물공여] - 전기공사를 하도급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1.~'22. 경까지 공단으로부터 철도공사를 낙찰받아 D 운영 회사에 일괄 하도급 [전기공사업법위반] - '20. 12.~'21. 7.경까지 회사 자금으로 자신 명의로 대지와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2억 원을 임의로 소비함 [업무상횡령] 	구속 구공판 (24. 8. 13.)
4	D (51세, 전차 관련 회사 실운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 [뇌물공여] -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1.~'22.경까지 공단으로부터 철도공사를 낙찰받은 C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음 [전기공사업법위반] 	불구속 구공판 (24. 8. 13.)

II

수사 경과

- '22. 11. 대전지검 수사과 자체첩보 접수 및 수사착수
- '22. 11. ~ '23. 9. 공단 및 업체 관계자 등 조사 및 계좌분석
- '23. 9. A 주거지 압수·수색 및 순금호랑이 압수
- '23. 9. ~ '24. 3. 뇌물공여자 운영 회사 등 압수·수색 및 공여자 조사
- '24. 3. A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하여 롤렉스 시계 두 점 압수
- '24. 4. ~ 7. 관련자 추가 조사 후 수사과 구속영장신청 및 검사 청구
- '24. 7. 17. A, B, C 구속영장 발부
※ D는 '자백하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 '24. 7. 25. ~ 8. 12. 대전지검 수사과 송치 및 검사 보완수사
- '24. 8. 13. A, B, C 각 구속기소, D 불구속기소

III

수사 결과 및 의의

- 국가철도공단 고위 임원의 불법하도급 개입 및 뇌물수수 범행 엄단
 - 공사발주, 시공관리, 낙찰적격 심사, 불법 하도급 감시를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전차선로 공사 낙찰자로 하여금 특정 업체에게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A를 특가범위반(뇌물) 및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하였음
 -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자격을 갖지 못함에도 A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상납하고, 그 대가로 불법 하도급을 받아 300억 원 이상의 전차선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표 B, C, D를 뇌물공여 및 전기공사업범위반으로 기소하였음
 - 대전지검 수사과에서 자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수사하여 국가철도공단 고위 간부가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는 구조적 비리를 확인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장기간의 상납 등 공공기관 임원의 뇌물수수 범행의 전모를 밝혀 엄단하였음

● **경쟁입찰의 형해화로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철도 안전의 위험성 확인**

-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의 특수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철도 전기공사의 경우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
- 공단 임원의 불법적인 요구로 철도시설 공사에서 무자격자의 시공이 가능해지면서 공단 발주 공사의 엄격한 경쟁 입찰절차가 형해화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공사의 실태를 확인하였음

●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하여 비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대전지점은 8. 7. (수) 국가철도공단 본부장급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비리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음
- 공단은 ▲비리가 적발된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관리 실태 확인 및 안전 점검 실시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철도 전기공사의 하도급 실태 확인 ▲실질적인 전기공사 하도급 방지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함

IV 향후 계획

- A가 뇌물수수를 통해 취득한 롤렉스 시계, 순금호랑이 등은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추징 등을 통하여 환수할 예정임
-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음 